

카지노 출입관리 지침

[2018.02.27]

제 정 2018. 02. 27.

일부개정 2018. 08. 07.

일부개정 2018. 10. 01.

일부개정 2019. 09. 30.

일부개정 2021. 05. 28.

일부개정 2021. 12. 27.

일부개정 2022. 12. 14.

일부개정 2024. 11. 0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카지노업 영업준칙」 제15조에 의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05.28.>

제2조(적용범위) 카지노 영업장 출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에 관한 모든 관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1.05.28.>

1. “출입관리”라 함은 회사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여부 및 회사 내 고객의 특정행위에 따른 출입금지, 당일퇴장, 입장거절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출입금지”라 함은 관련법령 및 본 지침의 출입금지 세부사항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2.12.14.>

3. “입장거절”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카지노영업장 입장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 문제시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14.>
4. “퇴장조치”라 함은 카지노영업장 입장 후 영업행위 방해 등의 사유로 카지노영업장 외부로 안내하고 입장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1.12.27.>
5. “출입금지 해지”라 함은 출입금지 사유 해소, 출입금지 기간 경과 등에 따라 출입금지 대상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1.12.27.>
6. <신설 2021.12.27.><삭제 2022.12.14.>
7. “당일퇴장”이라 함은 영업장 질서유지 및 고객과 직원 보호 차원에서 1일에 한해 카지노 영업장을 출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.
8. “방문자”라 함은 영업장에 업무 관련하여 내방하는 모든 방문객을 말한다.<개정 2021.05.28.>
9. “가족”이라 함은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.
10. “멤버십카드”라 함은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에게 해당 팀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.
11. “주무부서”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출입 관리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.<신설 2021.12.27.>
12. “담당직원”이라 함은 고객의 출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직원을 말한다.<개정 2021.12.27.>
13. “심의위원회”라 함은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적용에 있어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카지노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심의·결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.
14. “VIP고객”이라 함은 멤버십카드 등급이 플래티늄, 세븐스타, 루비, M-Gold, M-Platinum인 고객을 말한다.<신설 2019.09.30.>
15. “일반고객”이라 함은 VIP를 제외한 고객으로 멤버십카드 등급이 실버, 골드인 고객과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객을 말한다.<신설 2019.09.30.>

제2장 출입 관리

제4조(고객 출입 관리) ① 영업장에는 내국인(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

및 업무상 방문자는 제외) 및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.

- ② 회사는 고객이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을 각인별로 직접 확인하고, 출입가능 신분증은 【별표 1】과 같다. 단,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(멤버십 고객)은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담당직원은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, 고객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14.>
- ④ 회사는 고객에게 열거한 신분증 이외 당사 출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인별 세부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⑤ 회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십카드의 유효기간은 출입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된 멤버십카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.<개정 2022.12.14.>
- ⑥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지 않은 고객이 등록을 요청할 경우 멤버십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모든 멤버십카드의 발급은 각 영업장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22.12.14.>
- ⑦ 회사는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19.09.30.><개정 2021.05.28.>
- ⑧ 동반한 여행사 직원(알선자)이 명단을 제출한 단체 입장객의 경우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명단이 허위일 경우에는 여행사 직원은 【별표 2】에 의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.
- ⑨ 회사는 고객에게 카지노 영업장 내 타 고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(무기류, 동식물 등)의 보관을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방문자 출입)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시킬 수 있다.

- 1.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 직원<개정 2021.05.28.>
- 2.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방문객<개정 2021.05.28.>
- 3. 기타 카지노영업장과 관련하여 업무, 견학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려는 사람

② 회사는 카지노영업장을 출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방문증을 패용하게 하고 카지노게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5.28.>

제6조(출입금지)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카지노 영업장 입장을

금지할 수 있다.

1.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
2. 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」 제 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
3.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
4. 폭력·만취·고성방가·정신장애·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
5.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
6. 카드카운터 등 전문 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
7.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자
8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병원체 보유자,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 환자
9.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카지노영업장 내를 촬영하려는 자
10. 위력, 위계,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
11.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
12.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을 무고(誣告)하는 자
13.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에게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민사상 청구 또는 행정상 민원을 제기하는 자
14. 기타 카지노영업장 질서 유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의 심의위원회에서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15. 「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항」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<신설 2022.12.14.>

② <신설 2019.09.30.><삭제 2022.12.14.>

③ 출입금지 세부사항은 【별표 2】을 기준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.
<개정 2019.09.30., 2021.12.21.>

제7조 (요청에 의한 출입금지) ① 회사는 카지노 고객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 「카지노업 영업준칙」에 따라 대상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자는 【별표 3】에 정한 구비서류를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27.>

② 담당 직원은 전항에 따라 징구된 서류를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해당 고객의 출입금지를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27., 2022.12.14.>

③ 회사는 타 고객의 보호 및 카지노영업장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무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27.>

제8조(입장거절)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객의 영업장 입장을 불허할 수 있다.<개정 2021.05.28.>

1.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복장 등으로 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위화감 등을 느끼게 하는 자
나. 악취 등으로 인하여 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
다. 전염성이 있는 각종 질병이나 지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라. 타 고객 보호 및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2.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3. 신분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및 서류 등의 제시를 거부한 자
4. 무기류 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
5.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입장하려는 자
6. 음주자로 게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<개정 2022.12.14.>
7. 다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

제9조(퇴장조치) ① 회사는 영업장에 입장한 고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.<개정 2019.09.30., 2021.05.28., 2021.12.27., 2022.12.14.>

1. 과도한 음주로 영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우려가 있는 자
 2. 영업장 내 질서유지 및 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
 3. 영업장 내 부정행위로 인하여 출입금지를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<개정 2019.09.30.>
 4.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자
- ② 회사는 본 지침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거나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이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.<개정 2019.09.30.>
-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퇴장을 요구받은 고객이 퇴장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.<개정 2019.09.30., 2021.05.28.>
- ④ 회사는 퇴장조치 된 고객의 사안에 따라 출입금지를 할 수 있다.<신설 2019.09.30>

[전문개정 2019.09.30.]

제10조(출입금지 해지) ① 회사는 본 지침 제6조와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객이 출입금지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출입금지 사유 해소 및 【별표 2】에 따른 출입금지 기간이 경과 하면 해지할 수 있

다. 단, 해지 시 사안에 따라 **【서식 1】** , **【서식 2】** 를 고객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27.>

② 본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는 고객의 해지 의사가 있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입금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·형사상 법적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다.<개정 2021.12.27.>

1. 출입금지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**【별표 3】** 에 따른다.
2. 출입금지 된 날로부터 1회는 3개월이 경과, 2회는 6개월 경과, 3회는 1년 경과, 4회 이상은 2년이 경과 되어야 해지 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27., 2024.11.05.>
3. 가족 또는 본인의 출입금지 신청 횟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.
4. 가족 요청인 경우 최초 요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 할 수 있으며, 요청자의 가족 구성요건이 상실(이혼, 사망 등) 되었다면 본인이 해지할 수 있다.
5. 고객의 단순 변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비서류를 제출한 시로부터 고객이 퇴장한 영업일을 제외한 영업일 2일 이내에는 출입금지 요청을 철회 할 수 있다.<신설 2021.05.24.> <개정 2021.12.27., 2022.12.14.>

③ 회사는 본 지침 제6조 제3항에 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출입금지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각 마케팅팀에서 출입금지 해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근거를 명시하여 주무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입금지 해지할 수 있다. 단, 본인의 해지 희망 확인은 구두나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한 후 차후 출입 시 **【서식 3】** 을 징구함으로 완성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 27., 2022. 12. 14.>

④ 회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 고객 중 본 조 제2항 2호에 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출입금지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마케팅 본부의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해지를 의결한 경우 주무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하면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입금지를 해지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출입금지 해지의 전결권자는 VIP 고객은 본부장, 일반고객은 점장으로 한다.<개정 2021.12.27., 2022.12.14.>

제11조 <본조 삭제 2022.12.14.>

[본조신설 2019.09.30.]

제12조 (업무 상 재해 처리) 본 지침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 임직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형사상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담당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한다.

<개정 2021.05.28., 2021.12.27.>

1. 소송대리인, 변호인 등의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
2. 판결, 조정, 중재, 화해 등 소송절차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전액

제3장 심의위원회

[본조신설 2019.09.30.]

제13조 (심의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05.28., 2021.12.27.>

1. 본 지침 제6조 제3항의 출입금지 중 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
2. 본 지침 제7조 제3항, 제10조 제3항과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
3. 기타 본 지침 해석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② 고객별 심의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1.05.28.>

1. VIP고객 심의 : 점장, ‘오퍼레이션팀장 또는 전자게임운영팀장 중 1인’, 해당 고객의 소속 마케팅 팀장, 서버일런스팀장, CS팀장<개정 2021.05.28., 2021.12.27.>
2. 일반고객 심의 : CS팀장, CS팀슈프트매니저, 심의 안건의 관련 부서 팀장, 멤버십 마케팅팀장, 서버일런스팀장<개정 2021.12.27.>
3. 상기 직책의 심의위원이 부재일 경우 차선임자가 위원회에 참석한다.
4. 본 지침 제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 판단 하에 근로자측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.<신설 2024.11.05.>

③ 본 위원회 소관부서는 CS팀으로 하며 전항 제1호의 경우 위원장은 점장, 간사는 CS팀장으로 한다. 전항 제2호의 경우 위원장은 CS팀장, 간사는 CS팀 슈프트매니저로 한다.<개정 2021.12.27.>

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1.05.28.>

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.<개정 2021.05.28.>

1. 출입관리지침 적용의 적절성
2. 보고서 및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

3. 게임성향 등 제반내용을 고려

4. 일반고객 심의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VIP 고객 심의에 준하여 심의 할 수 있다.

<신설 2021.05.28.>

⑥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참석자를 명시하여 【서식 4】에 자필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서면의결)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의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5조 (지침의 게시 등) 회사는 본 지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.

<개정 2019.09.30.>

부 칙(2018.02.27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.02.27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8.07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.08.07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0.01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.10.0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30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.09.3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5.28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.05.28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2.27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.12.27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2.14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.12.14.부터 소급 시행한다.

제 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제10조(출입금지 해지)의 적용은 종전지침으로 출입 금지된 자에 대해서도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4.11.05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.11.05.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<개정 2019.09.30., 2022.12.14., 2024.11.05.>

출입 가능 신분증

고객 대상 구분	신분 증명 및 세부 사항
외국인	여권, PT여권(여행증명서)
	외교관 신분증
	미군 현역 ID카드
	선원수첩(선원증)
	외국인등록증
	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
	영주증
	※ 신분 확인을 위하여 상기 신분증 외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고객 대상 구분		신분 증명 및 세부 사항
해외이주자	일반	대한민국 여권 + 영주자격 증명서 + 주민등록표 초본
	예외 국가	상동 + 출입국스탬프 + 동의서(법적 책임) 【서식 5】 + 출입국 사실 증명서
	필리핀 은퇴비자	상동 + 출입국스탬프(필리핀 실거주 183일 충족) + 동의서(법적 책임) 【서식 5】 + 출입국 사실 증명서
	일본 특별 영주자	여권 + 특별 영주자 카드
	주민등록 무등록자	여권 + 영주자격 증명서

※ 행정지도에 따라 출입 절차와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.

※ 예외국가라 함은 영주권 획득 및 유지가 용이한 국가들로 회사가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를 의미함.

【별표 2】 <신설 2019.09.30.><개정 2021.05.28., 2021.12.27., 2022.12.14., 2024.11.05.>

출입금지 기간 세부사항

구 분	행 위		적 용			비 고
			1회	2회	3회	
출입 절차 관련	신분증 또는 멤버십카드 양도 · 양수	내국인에게 양도	무기한 출입금지			※ 대한민국여권일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(형법 제230조) ※ 외국여권일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(형법 제236조)
		외국인에게 양도 · 양수	당일 퇴장	1월	3월	
		출입금지자에게 양도 · 양수	1월	3월	6월	
	기타 부정한 방법의 출입관련 위반		입장 불가			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신고
가 이 드 및 방 문 자 관 련	가 이 드	내국인 가이드 게임시도	활동 금지 3월	무기한 활동 금지	-	
		명단과 다른 단체고객(내국인 및 미성년자) 입장시도	활동 금지 3월	무기한 활동 금지	-	
		수수료 발생 목적 쿠폰 부정 사용 - 영업장 내 일반고객에게 쿠폰과 함께 침스구입을 강요하며 배포하는 행위 - 외국인 가이드가 본인이 게임을 하면서 수수료 처리를 위하여 쿠폰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- 기타 수수료 처리질서 위반행위	경고 조치	활동 금지 3월	무기한 활동 금지	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신고 ※ 업무방해죄 성립 (형법 제314조)
		폭행, 협박, 위계, 모욕 등에 의하여 회사 영업 방해	경고 조치	활동 금지 3월	-	
	방 문 자	방문증 미패용	경고 조치	퇴장 조치	-	방문증 미패용 시 영업장 출입불가통보
		게임 참여 시도	퇴장 조치	-	-	관련부서 내용통보 및 방문업체 입장불가 통보
		방문증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	경고 조치	퇴장 조치	-	방문증 미패용 시 영업장 출입불가통보
		기타 방문증 패용자가 업무 외 행위	경고 조치	퇴장 조치	-	관련부서 내용통보

구분	행 위		적 용			비고
			1회	2회	3회	
영 업 장 관 련	소 란	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위반	당일 퇴장	1월	3월	-폭행, 욕설 및 협박 -억지성 컴플레인 -음주 소란 등
		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위반	경고 조치	당일 퇴장	1월	-분쟁으로 인한 단순 소란 (즉시 해결) 등
	절도		무기한 출입금지	-	-	
	성희롱 · 성추행		-	-	-	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의결
	KTC매매 등 금전거래		1월	3월	6월	
	점유이탈물 횡령	비고의	경고 조치	1월	3월	배상책임 有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신고 ※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(형법 제360조)
		고의	3월	무기한 출입금지	-	
	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 통화	비고의	경고 조치	1월	3월	기록물 삭제
		고의	1월	3월	6월	
	시설물 파손 및 훼손	비고의	경고 조치	1월	3월	배상책임 有 (형법 제366조)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신고 ※ 고의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재물손괴죄 성립
		고의	1월	3월	6월	
	블랙컨슈머		1월	3월	6월	
	부정 게임		무기한 출입금지	-		※관련 팀과 협의 후 조치
	게임 진행 방해	비고의	경고 조치	당일 퇴장	1월	※관련 팀과 협의 후 조치
		고의	1월	3월	6월	
	콤프 · 쿠폰 관련 부정	비고의	경고 조치	당일 퇴장	1월	※관련 팀과 협의 후 조치
		고의	1월	3월	6월	
	전자게임 · 슬롯머신 바우처 절취 타 고객 침스 및 크레딧 무단사용	비고의	경고 조치	1월	3월	※관련 팀과 협의 후 조치
		고의	무기한 출입 금지			
	기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		1월	3월	6월	경.중에 따라 적용 기간 결정
기타	위계 ·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		입장불가			심의위원회 의결 후 조치
	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의 명예 훼손 및 무고 (誣告)		입장불가	-	-	심의위원회 의결 후 조치
	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(원액션 아웃 제도 :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)		입장불가	-	-	심의위원회 의결 후 조치
	자금세탁방지 Watch list 대상고객 (외국 정치적 주요인물, UN 테러리스트, 금융위원회 고 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, SDN 명단)		출입불가	-	-	
	불법사금융		무기한 출입금지	-	-	

※ 영업장 위반, 사건 · 사고의 경중에 따라 출입금지 기간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.

※ 불법 사금융 행위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함.

【별표 3】 <개정 2021.12.27., 2024.11.05.>

출입금지 및 해지 요청 구비서류

구분	요청자	구비서류	비고
출입금지	가족 등	- 출입금지 요청서 【서식 6】 - 가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 관계 증명서, 결혼 증명서 등) - 요청자 신분증 - 요청자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【서식 7】 - 피요청자 신분증	각 1부
	본인	- 출입금지 요청서 【서식 6】 - 요청자 본인 신분증	
출입금지 해지	가족 등	- 출입금지 해지 요청서 【서식 3】 - 가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 관계 증명서, 결혼 증명서 등) - 요청자 신분증 - 피요청자 신분증	
	본인	- 출입금지 해지 요청서 【서식 3】 - 요청자 본인 신분증	

※ 가족 출입금지 요청 시 요청자는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며 방계 가족 관계에 있는 자는 요청자에서 제외된다.

※ 이미 본인의 요청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대상자 및 제6조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이 출입제한을 중복 또는 교차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기존 제한과는 별개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【 서식 1】 <개정 2021.05.28., 2022.12.14., 2024.11.05.>

화 약 서

본인은 년 월 일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가 운영하는
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점□, 서울드래곤시티점□, 부산롯데점□에서 발생한 행위를 인정합니다.

신분증 및 멤버쉽카드 부정사용 ☐

영업장 관련 규정 위반 ☐

기타 【

)

본인은 이 확약서 작성일 이후 회사의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기 행위의 재발 방지를 확약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출입제한을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를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을 확약합니다.

※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사건·사고 관리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하에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: 연락처, 생년월일, 성명 / 수집목적: 사건·사고 관리 / 보유기간: 10년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□동의

□ 동의 안함

연 락 처 :

생년월일 :

성명 :

(서명)

환 약 일 자 :

5

OFF

10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

【서식 2】

사 실 확 인 서

본인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,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
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인정합니다.

연 락 처 :

생 년 월 일 :

성 명 : (서명)

일 자 : 년 월 일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

출입금지 해지 요청서

구 분	내 용
요 청 지 점	강남코엑스점 ☐ 서울드래곤시티점 ☐ 부산롯데점 ☐
출입해지 대상자	
대상자와의 관계	가족 ☐ 본인 ☐ 기타 :
연 락 처	T :
※ 본인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 해지를 요청합니다.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으며, 향후 귀사에 대해 일체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 20 년 월 일 요청자 : _____ (서명)	
【건전 게임 준수에 관한 자가 서약】 본인은 건전 게임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 1. 게임 한도액을 정하고, 정한 액수 내에서만 게임을 한다. 2. 게임 한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서만 한다. 3. 게임을 위해 절대 돈을 빌리지 않는다. 4. 주기적으로 게임 과몰입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과몰입 상태를 점검한다. 20 년 월 일 서약자 : _____ (서명)	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

【서식 4】 <개정 2021.12.27.>

심의위원회 처리결과

20 . . (요일)

☐ 심의위원회 개최

○ 일 자 :

○ 장 소 :

○ 참석인원 :

☐ 심의내용

심의안건																		
심의개요	◆ 사건 일자 : ◆ 심의 대상 : ◆ 사건 내용 :																	
심의사유																		
심의결과	◆ 심의 의견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기명 날인</th><th>심의 내용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위원장</td><td>(인)</td><td></td></tr><tr><td>팀</td><td>(인)</td><td></td></tr><tr><td>팀</td><td>(인)</td><td></td></tr><tr><td>팀</td><td>(인)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			구분	기명 날인	심의 내용	위원장	(인)		팀	(인)		팀	(인)		팀	(인)	
구분	기명 날인	심의 내용																
위원장	(인)																	
팀	(인)																	
팀	(인)																	
팀	(인)																	

해외이주자 법적 책임 동의서

○ 성 명 : _____

○ 고객번호 : # _____

상기 본인은 세븐럭 카지노가 외국인 및 해외이주자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을 인지하고 있으며, 출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해외이주자 자격보유자임을 확인합니다.

또한,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.

1. 향후 해외이주자 자격 반납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신분 변화가 있을 시, 즉시 귀사에 통보하고 출입 자격 상실로 인한 출입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2. 1번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/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어떠한 형태로의 민원제기,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
3. 귀사가 필요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.

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습니다. _____ (인)

20 . . .

동의자 _____ (인)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

가족/본인 출입금지 요청서

구 분	내 용
출입금지 대상자	
출입금지 요청자	(인)
출입금지 대상자와의 관계	가족 ☐ 본인 ☐
전 화 번 호	T:
요청 사유	개인사정 ☐ 이용불만 ☐ 가족요청 ☐
요 청 일	년 월 일

※ 유의 사항

1. 금지기간 중 출입금지 대상자가 위계,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사의 영업장에 출입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, 형사상, 행정상 책임일체는 출입금지 대상자에게 귀속됩니다.
2. 출입금지 요청은 당사 강남코엑스점, 서울드래곤시티점, 부산롯데점 등 모든 영업장 출입에 적용됩니다.
3. 당사는 출입금지 요청자와 출입금지 대상자 사이의 가족관계가 소멸한 경우 출입금지 요청자의 동의 없이 출입금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4. 해지 요청은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.

출입금지 최소기한	
1회 출입금지 요청 시	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지불가
2회 출입금지 요청 시	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불가
3회 출입금지 요청 시	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불가
4회이상 출입금지 요청 시	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 해지불가

◆ 동일인의 본인/가족 요청 출입금지 신청 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
5. 그 밖에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당사 출입관리지침에 의합니다.

출입금지 요청자는 위 내용에 관하여 당사 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제공 받았으며
이를 이해하고 아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.

서 명 : _____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

개인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서

성 명 : _____

상기 본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(주)(이하 “당사” 로 표기)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

제 1조 [목 적]

-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금지 대상자 판정
- 관광진흥법, 관광진흥법 시행령,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

제 2조 [수집정보 내역]

- 신분증 사본
-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, 사진, 방문 이력, 거주 국가, 체류 허가 기간, 이메일
- 고유식별번호(주민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)
- 가족관계 증빙 서류

제 3조 [보유, 활용 기간]

수집한 정보의 보유, 활용 기간은 수집 활용 목적 달성 시점으로 정합니다.

제 4조 [동의를 거부할 권리]

고객은 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당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 ☐ 미동의

신청일자 :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(인) _____

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